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증개정조례안

1. 제안이유

-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안 제25조, 제26조)
-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코자 함.

2. 주요골자

-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
-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삭제 (안 제3조)
 - 지방세법제270조④에서 감면
- 사권제한토지에 대한 본문 관련법령 정비 및 신설 (안 제12조)
-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의 설립근거가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안 제12조, 제13조)
-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 (안 제25조, 제26조)
- 감면시점을 명확히 함. (안 제11조, 제15조, 제16조, 제20조)
- 조문정리 (안 제1조, 제6조, 제12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 감면축소
 - 안 제10조(임대주택에 대한 감면) :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이하로 축소
 - 안 제14조(지방공사등에 대한 감면) : 민간출자분에 대한 사업소세 과세전환
 - 안 제18조(중소기업종합지원센타에 대한 감면) : 면허세 과세전환

3. 검토의견

이번 개정안은 광주광역시서구세감면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을 삭제하고,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조항을 신설하며, 사권제한토지 등에 대한 감면을 확대하고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의 근거법령인 도시계획법 및 개발제한구역의지정및관리에관한특별조치법이 변경됨에 따라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입니다.

안 제1조에 대한 의견임. 안 제1조는 현행 조례 제1조 중 “공익상 기타 사유로 인하여 필요한 때에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한”을 “지방세법 제7조의 규정에 의하여 공익상 기타의 사유로”로 개정하자는 것으로, 개정안처럼 개정한다고 하여 본 조례의 목적자체가 변경되는 것은 아니나, 개정안의 규율방식이 일반적인 법조문 규정방식에 따른 것이 판단됩니다.

지방세법의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따른 면허세 폐지의 관련조항(안 제2조 제2항 및 제3항, 안 제2조의2 제2항, 안 제12조, 안 제12조의3)을 삭제하는 것에 대한 의견입니다.

지방세법에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는 제1종에서 제5종까지로 하되, 면허의 종류와 종별구별 및 과세면제 등에 관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지방세법 제160조, 제161조), 대통령령인 지방세법시행령에서는 동법 제161조 제2항의 위임에 따라 면허세를 부과할 면허의 종류와 종별을 구분하여 별표와 같이 규정하고 있고(제124조 제1항), 별표 제1종 제22호를 삭제하여 자가용자동차등록에 대해서는 면허세를 부과할 대상으로 하고 있지 않습니다.

국가유공자단체에 대한 감면 조항(안 제3조)의 삭제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3조에서는 국가유공자등단체설립에관한법률에 의하여 설립된 대한민국상이군경회 등 국가유공자단체의 부동산에 대해서는 재산세와 종합토지세를 면제토록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에서는 이를 삭제하자는 것이고, 그 이유로서 개정된 지방세법 제270조 제4항(신설)에서 이들 단체에 대해서는 취득세·등록세·종합토지세·도시계획세 및 공동시설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에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1조에 대한 의견입니다.

조례 제13조의2에서는 미분양 주택에 대한 재산세 감면과 관련하여 그 시한에 대한 언급이 없으나, 안 제11조처럼 그 감면시한을 명시함으로써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보하고자 하는 것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와 안 제13조에 대한 의견으로서 이들 개정안은 사권이 제한된 토지 및 개발제한구역 내 취락정비사업으로 인한 주택개량에 대한 감면근거가 된 법률이 변경됨에 따라 해당 법조문과 관련규정을 정비하여 개정내용을 반영하고(안 제12조 제1항, 안 제13조), 도시계획시설로 결정 고시된 후 10년 이상 장기간 미집행된 토지 및 건물에 대한 재산세와 종합토지세 과세표준액을 경감하여 주민의 재산권을 보장하자는 안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2조 제2항, 신설)

안 제15조, 제16조, 제20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기간의 기산점에 대한 것으로 기존의 “최초 과세 기준일부터”를 “당해 납세의무가 최초로 성립하는 날부터”로 개정하여 감면시기를 명확히 하여 실질적인 보유기간 동안 구세 감면 혜택을 부여

하자는 안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제3장의 제목변경과 안 제6조, 제23조 및 제24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의 근거가 되는 관련법률의 변경에 따른 조문을 정리하기 위한 것으로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7조와 안 제21조에 대한 의견임. 현행 조례에서는 신용보증재단과 전쟁기념사업회에 구세를 감면해주는 그 대상을 그 “고유업무”에 직접 사용하는 부동산으로 규정하고 있으나, 개정안은 고유업무의 범위를 명확히 함으로써 고유업무의 해석을 둘러싼 논쟁을 불식하고 아울러 현행세제의 미비점을 개선·보완하며,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기 위한 것으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안 제10조, 안 제14조 및 안 제18조에 대한 의견임. 이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구세 감면의 대상을 축소하자는 안임. 안 제10조의 경우는 감면대상을 서민주택의 입법취지에 맞도록 85㎡에서 60㎡이하로 축소하고(제2호, 제3호), 조문해석상의 혼란을 해소하기 위해 관련조문을 정비하자는 것이며, 안 제14조는 지방공사 등에 대한 사업소 면제의 경우 사업소세 종업원할에 대해서는 민간출자비율만큼 과세로 전환하자는 것이고, 안 제18조는 면제대상이었던 광주광역시 중소기업지원센터 면허세에 대해 과세전환하자는 안으로서 열악한 지방재정력을 감안하여 지방자주재원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 이전에 대한 감면(안 제25조)과 농업기반공사에 대한 사업소세 면제 조항(안 제26조)의 신설에 대한 의견임. 안 제25조는 신기술과 지식을 실용화하는 벤처기업의 창업을 촉진하고, 벤처기업의 집단화 및 협업화를 통한 벤처기업의 영업활동을 조장하기 위하여 벤처기업의 밀집도가 높은 지역을 벤처기업육성촉진지구로 지정하여 자금지원 등 벤처기업 육성촉진정책에 따른 관련법령의 개정내용을 반영하자는 안이며, 안 제26조는 농어촌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농업기반시설을 종합관리하며 농업인의 영농규모 적정화를 촉진함으로써 농업생산성을 증진시키고, 농어촌의 경제·사회적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하여 설립된 농업기반공사에 대하여 사업소세를 면제하는 안입니다.

국가가 정책적으로 추진하고자 하는 분야의 초창기 기업의 경우, 자본과 기술의 부족, 자원의 빈약, 시장의 협소 등으로 정부나 지방자치단체의 지원과 보호 없이는 국제경쟁력 있는 기업의 성장이 어려우므로 금융이나 세제 면에서 정책적인 지원을 필요로 하게 된다는 점에서 개정안처럼 이들 기업에 대한 구세 감면은 타당하다고 생각합니다.

전체적으로 볼 때 이번 개정안은 본 조례의 적용시한 만료에 따른 정비와 관련법령의 개정과 취지에 따른 조문정리나 관련규정을 정비하고자 하는 안으로서, 이에 따른 표준안이 시달되어 조례를 개정함에 이르렀다는 점, 주민의 의무부과에 관한 사항은 합리적인 사유가 없는 한 지역적으로 달리 규정할 필요가 없다는 점, 과세의 공평성과 조세정책의 효율적 수행을 위하여 개정안처럼 개정함이 보다 합리직이라 생각합니다.